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정의)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세원관리 및 <u>채납처분</u>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p> <p>7. ~ 11.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강제징수----- ----- ----- ----- ----- ----- ----- ----- -----</p> <p>7.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채납처분 -> 강제징수)</p>
<p>제12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 ~ ③ (생략)</p>	<p>제12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점검주기 변경(반기별 -> 임기 중 1회 이상)</p>

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반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⑤ (생략)

제26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 (생략)

②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 후 처리할 본부세관을 지정한 후 이송해야 한다.

<신설>

<신설>

④-----

----- 임기 중 1회 이상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

③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관세법」 제118조의 2 내지 5에 규정된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처리 규정 신설

<신 설>

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7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4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처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이관해야 한다.

<신 설>

⑥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한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5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답변 처리한다.

<신 설>

⑦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이관 받은 처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되었음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제54조(요청 대상) ① ~ ② (생략)

③ 일반 관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 10. (생략)

④ (생략)

제55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 ② (생략)

<신설>

게 이관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 고충민원이 국민신문고시스템에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4조(요청 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강제징수-----

1.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

○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체납처분 -> 강제징수)

○ 권리보호요청 사안 인지 시 납세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③ (생략)

제64조(보정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기 전까지 기간을 정하여 권리보호요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48호 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전의 제3항과 같다)

제64조(보정요구) ①-----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62조에 따른 처리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장의2 과태료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제88조(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납

규정 마련

○ 보정기간 신설

○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납세자 의견 제출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 규정 신설

<신 설>

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접수 다음 날까지 보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 심의제외 등 처리방향을 처분 담당부서에 통지한다.

<신 설>

제89조(대리인) 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납세자(이하 이 장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권리보호요청”이라 하고 의견을 제출한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인”이라 한다)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과태료 사전통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 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보호요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 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 설>

제90조(권리보호요청 기간) 과태료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관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신 설>

제91조(처리기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의 사실 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 설>

제92조(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준용 규정) 이 장에 규정된 권리보호요

<신 설>

제88조 ~ 제90조 (생 략)

제8장 제도개선

<신 설>

<신 설>

<신 설>

청에 대한 관세청 및 본부세관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64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3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는 법 제11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4조 ~ 제96조 (종전의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와 같다)

제8장 관세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제1절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97조(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 ①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조사착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9호 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관세조사결

○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신 설>

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 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98조(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진행·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0호 서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의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7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신 설>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세조사 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신 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 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신 설>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해야 한다.

제99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37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7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91조(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⑤ (생략)

<신 설>

2. 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00조(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제99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5조, 제67조부터 제76조를 준용한다.

제101조(사후관리) 조사국(과)장은 제98조제6항 및 제99조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제2절 제도개선

제102조(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

○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의 제도개선 요청 근거규정 신

<u>제92조 ~ 제96조</u> (생략)	<u>보호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u> <u>제103조 ~ 제107조</u> (중전의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와 같다)	설
-------------------------	--	---

서 약 서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3. 본인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4.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세관장(관세청장) 귀하

【뒷면】

□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한 고충민원 처리절차 안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관세청


고충민원이란


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안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
납세자 권리보호
고충민원 해소

처리업무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시정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시정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관세청

고충민원 처리절차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민원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 검토

소관 부서 의견 조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관세청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 과정에서 귀하(귀사)의 권리를 침해한 관세공무원의 행위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권리침해 내용				
처리 내용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조사공무원(조사팀장) 성명 :	
		조사개시일 : 년 월 일	
구분	관세조사절차 적법 준수 여부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답변	
		양호	불량
1	「관세조사 사전 통지」는 조사 개시 15일전까지 받았습니까?		
2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조사공무원이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까?		
4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조사유예 신청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까?		
5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까?		
6	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받았습니까?		
7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절차와 진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까?		
8	서류, 증명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9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해명기회가 귀하에게 충분히 제공되었습니까?		
10-1	당초 통지된 조사범위(분야, 조사대상 기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조사범위 확대 시 :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10-2	조사기간은 당초 통지된 조사기간 내에 종료되었습니까? (조사기간 연장 시 :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11	관세조사 결과(과세항목, 과세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12	조사공무원이 친절하였습니까?		

